

수 납 규 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농공학회(이하“학회”라 한다)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하여 회비 등의 수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비”라 함은 회원이 매년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2. “부담금”이라함은 임원이 회비 이외에 학회 재정지원을 위하여 매년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3. “협찬금”이라함은 회원, 단체 및 기업체가 학술지 발간과 학술행사 등을 위하여 지원하는 기부금, 광고협찬금 및 기타 현물을 말한다.(2010. 04. 15 개정)
4. “광고협찬금”이라함은 단체 또는 기업체가 학회지 또는 논문집에 광고를 게재하고 이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5. “지원금”이라함은 학술지원단체가 매년 학회의 학술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2010. 04. 15 개정)
6. “연구관리비”라함은 학회가 연구용역사업을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관리비용으로서 연구용역 총액의 일정비율을 부담시키는 금액을 말한다.

제 2 장 회 비

제3조(회비의 구분) 회비는 입회비, 정회원비, 준회원비 및 단체회원비로 구분한다.

제4조(회비의 결정) ① 회비는 학회의 재정여건과 물가변동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2010. 04. 15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결정된 회비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회비의 납입고지 및 수납) ① 회비는 원칙적으로 매년 청구 문서로 납입고지 하여야한다.(2010. 04. 15 개정)

② 회비의 수납은 학회의 거래은행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원이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즉시 학회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2010. 04. 15 개정)

제6조(회비의 납부면제) ① 개인인 회원이 연회비의 12년분을 일시에 납입한 때에는

평생토록 회비의 납부를 면제한다.

② 회원이 학회에 가입하여 다년간 학회활동을 하고 65세에 도달한 이후 “명예회원 추대 및 예우 규정”에 의거 명예회원에 추대된 경우에는 회비를 면제한다.(2010. 04. 15 개정)

제7조(회비의 체납) ① 회원이 회비를 미납할 때에는 재차 납입고지를 하여 납부토록 촉구하여야 한다.(2010. 04. 15 개정)

② 회원이 계속하여 3년 이상 회비를 체납할 때에는 이사회 결의로 회원 자격을 정지하고 학회지의 배포를 중단한다.

제 3 장 부 담 금

제8조(부담금의 납부의무) 임원은 매년 일정금액의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9조(부담금의 결정) ① 부담금은 학회 재정여건과 다음 년도의 예산을 고려하여 결정한다.(2010. 04. 15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결정된 부담금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부담금의 납입고지 및 수납) 임원 부담금의 고지 및 수납은 제 5조에 준한다.

제 4 장 협 찬 금

제11조(협찬금의 모금) 임원과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회의 재정 확충과 학술행사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협찬금의 모금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협찬금의 결정) 금전이나 현물에 의한 협찬금은 그 금액의 한도를 정하지 아니하며 광고에 의한 협찬금은 제17조에 준하여 결정한다.

제13조(기부금 영수증 발급) 학회는 법인세법 제24조에 규정한 기부금지정 단체로 지정받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함으로써 협찬단체가 협찬금 기탁을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제14조(협찬업체 지원) 학회는 협찬금을 기탁한 단체에 대하여 학술발표회 때 제품 홍보 전시장소 제공 및 학회지에 협찬업체 게재 등 최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 5 장 광고협찬금

제15조(광고협찬 유치) 임원은 광고협찬을 임기 중에 최소한 1건 이상을 유치하여야 한다.(2010. 04. 15 개정)

제16조(협찬광고 지면) 광고는 학회지 또는 논문집의 표지와 내지에 게재한다.
(2010. 04. 15 개정)

제17조(광고협찬금 및 유치수수료의 결정) ① 광고협찬금 및 유치수수료는 학회지 또는 논문집의 게재지면과 크기에 따라 결정한다.(2010. 04. 15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광고협찬금과 유치수수료율은 별표 3과 같다.
(2010.0 04. 15 개정)

제 6 장 지 원 금

제18조(사업지원 요강) 학회는 학술지원단체가 발표하는 학술사업 지원요강에 대한 정보를 적기에 신속하게 입수하여야 한다.

제19조(사업계획 및 실적) 학회는 학술지원단체가 요구하는 학술사업의 당해 년도 계획과 전년도 실적을 기한 내에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지원금 신청) 학회는 학술지원단체의 분기별 지원금 배정계획을 확인하고 분기별 학술사업실적에 따라 적기에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2010. 04. 15 개정)

제21조(사업계획 변경통보) 학회는 당초 학술지원단체에 제출한 계획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변경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 7 장 연 구 관 리 비

제22조(연구용역 참여) 학회는 외부기관에서 발주하는 농공분야의 연구용역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23조(연구용역 수주) 각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임기 중 가능한 1건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을 수주한다.

제24조(연구관리비) 연구용역사업의 관리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회에서 직접 수주한 연구용역사업: 용역사업비 총액의 20%
2. 학회의 회원이 수주한 연구용역사업: 용역사업비 총액의 10%

제 8장 논문 구독료, 심사료 및 게재료

제25조(논문 구독료 및 게재료 결정) ① 학회 논문 구독료, 심사료 및 게재료는 논문 발간비용과 게재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2010. 04. 15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구독료, 심사료 및 게재료는 별표 4와 같다. (2010. 04. 15 개정)

제26조(논문구독 신청 및 구독료 납부) 논문 구독을 원하는 자는 별표 양식에 의거 구독신청과 함께 구독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7조(논문 심사료, 게재료 납입고지 및 수납) ① 논문 심사료는 원고 투고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고, 게재료는 투고한 심사결과 게재확정이 결정되어 논문집 초교본이 발간되면 게재 면수에 따라 납입고지를 하고 수납한다.(2010. 04. 15 개정)

제 9 장 도서 판매비 등

제28조(도서판매비) 학회가 소장하고 있는 도서의 판매비는 그 도서의 제조원가를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판매비는 별표 5와 같다.(2010. 04. 15 개정)

제29조(학술발표회 참가비) ① 학술발표회 참가비는 발표회의 개최장소 또는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참가비는 별표 5와 같다.(2010. 04. 15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명예회원으로 추대된 경우에는 참가비 납부를 면제한다.(2010. 04. 15 신설)

부 칙

①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2004년 7월 16일 제정

② 이 규정시행과 동시에 “회비에 관한 규약” 과 “회원가입 절차 및 회비 규정” 은 폐지한다

개정 2005년 10월 27일

개정 2006년 02월 10일

개정 2007년 02월 27일

개정 2010년 04월 15일

<별표> 1

회 비

단위 : 원

구 분	내 역	금 액	비 고
입 회 비	신규 회원으로 입회 시 부담 하는 금액	10,000	
정 회 원 비	매년 정회원이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금액	40,000	일반인
평생회비	회원이 일정액을 일괄 납부 하고 평생 연회비로 가름 하는 금액	480,000 300,000	일반인 대학원생
준 회 원 비	매년 준회원(대학생)이 부담하는 금액	20,000	
단체회원비	매년 단체회원이 부담하는 금액		
	대기업(특급)	10,000,000 이상	
	대기업(1급)	5,000,000 이상	
	대기업(2급)	3,000,000 이상	
	중소기업(1급)	1,000,000 이상	
	중소기업(2급)	500,000 이상	
	농공학과, 연구소	300,000 이상	
	도서관	150,000	

<별표 2>

부 담 금

단위 : 원

구 분	내 역	금 액	비 고
회 장	재정확충을 위하여	2,000,000	- 단체회원, 광고협찬 200% 이상 유치 시 면제 - 유치수수료는 지급 아니함.
차기회장	임원이 매년	1,000,000	
및 부회장	부담하는 금액	200,000	
이사 및 감사			

<별표 3>

광고협찬금 및 수수료율

단위 : 원

구 분	광고지면 위치	크기	광고료	수수료 율	비 고
전원과 자원	표지 4면	B5	3,000,000	광고협찬금의 15%	광고 지면의 위치는 광고 수주량에 따라 적절히 조정할 수 있음.
	표지 2면, 3면 내지 1면, 마지막 면	B5	2,000,000	광고협찬금의 15%	
	내지 2면, 내지 마지막 면 직 전면	B5	1,000,000	광고협찬금의 20%	
	내지 중간 면	B5	500,000	광고협찬금의 20%	
논문집	표지 2면, 3면 내지 1면, 마지막 면	A4	1,000,000	광고협찬금의 20%	
	내지 2면, 마지막 직 전면	A4	500,000	광고협찬금의 20%	

<별표 4>

논문구독료 및 게재료

단위 : 원

구 분	내 역	금 액	비 고
논문구독료	◇ 매년 논문집을 구독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 국문논문집	20,000	
	○ PWE	60,000	단체회원 : 150,000
논문게재료	◇ 논문집에 논문을 게재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투고 시 즉시 납부
	○ 논문 심사료	60,000	
	○ 긴급 논문 심사료	180,000	
	○ 조 판 비		
	-기본 8p까지	60,000	
	-초과 2p까지	20,000	
	-초과 3p이상	40,000	
	-초과 5P이상	60,000	
	-초과 7P이상	80,000	
	○ 연구비 지원기관 표시	50,000	추가 부담
	○ 별쇄 대금	30부 무료	초과 10부당 10,000

<별표 5>

도서판매비 및 행사참가비

단위 : 원

구 분	내 역	금 액	비 고
도서판매비	학회 소장도서 판매 대금	30,000	도서에 따라 판매비를 탄력적 조정
행사참가비	학술대회 등에 참가시 부담하는 금액	50,000	개최 장소에 따라 탄력적 책정